

## 공 고

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8 년 4 월 15 일

속 초 시 장



### 1. 담배소매업 폐업내역

| 상 호 명      | 성 명 | 영업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매구분 |
|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훼미리마트 부영점  | 윤태권 | 속초시 조양동 1503-6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   |
| 세이브마트      | 추유호 | 속초시 조양동 주공4APT<br>1단지 상가 101호, 102호 | 일반   |
| 훼미리마트속초장사점 | 이근미 | 속초시 장사동 624-2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   |

### 2. 공고기간 : 2008. 4. 15 ~ 2008. 4. 21

#### [ 신규지정 신청안내 ]

○ 신청기간 : 2008. 4. 22 ~ 2008. 4. 29

○ 신청대상 : 위 폐업장소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지정 희망자

○ 접수처 : 속초시청 종합민원실(본관3층 지역경제과 경유)

#### ○ 제출서류

-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. (본관3층 지역경제과에서 작성가능)
-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.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
○ 지정방법 :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

(단, 담배사업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함)

#### ○ 기타사항

-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또는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경우 우선권이 부여 됨  
(가족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함)

- 국가유공자증명 서류,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

※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시청 지역경제과(☎639-2376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